







보도자료 5월 12일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

배 포 일	2020. 5. 11. / (총 2매)	담당부서	급여기준과
과 장	김 혜 래	전 화	044-202-3140
담 당 자	황 상 철	건 - 와 	044-202-3144

시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5.12)

- ▲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,
- ▲ 국립묘지 등에 안장,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,
 - ▲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-
- □ **보건복지부**(장관 박능후)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, 이 5월 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,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」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.
- □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방치,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·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. (영 별표2)









-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,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. (영 별표1)
-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,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* 한도를 폐지한다. (영 제27조제3항)
 - *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(부정수급자)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
- □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"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·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
< 별첨 >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

